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[별지 제3호서식] (앞 쪽)

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사항 변경 신고서

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번호	년 제 호

청구인	성명(명칭)		생년월일(등록번호)
	주소		
	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		전자우편
	대표자	성명	
		연락처(휴대전화) 또는 전자우편	
청구인이 포괄승계인인 경우	피해자의 성명		
	승계사유 및 연월일 년 월 일 로 인하여 승계함		
대리인	성명		생년월일
	주소		
	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		전자우편
범죄피해재산 및 환부청구재산	범죄피해재산 Ⓐ	금전 외 재산: (가액: 원)	
		금전: 원	
	공제금액 Ⓑ	반환 또는 배상의 연월일	반환 또는 배상액
		. . .	원
		. . .	원
		공제대상합계액	원
	환부청구재산 및 그 가액(Ⓐ - Ⓑ): _____(원)		
지급받을 계좌	계좌 명의자: 은행명:		
	계좌번호:		
변경신고 내용			

위와 같이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.

. . .

청구인: (서명 또는 인)

첨부서류	뒤쪽을 참조하십시오.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신청인(대표자) 제출서류	담당 공무원 확인사항
변경신고 내용을 소명하는 자료	1. 가족관계증명서(청구인이 피해자의 포괄승계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만 해당합니다)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*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가족관계증명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(대표자) (서명 또는 인)